

17.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 2023년 7월 7일
- 제안자 : 이동욱 · 김대현 · 김원규 · 김정옥 · 김재용 · 권기훈
박우근 · 손한국 · 이성오 · 이영애 · 이재숙 · 육정미
윤권근 · 조경구 · 하병문 · 하중환 · 허시영 · 황순자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7월 10일
- 상정일자
 - 대구광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3년 7월 21일) :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동욱 의원)

□ 제안이유

- 일부 공동주택 입주자들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등)의 인권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함.

□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시장, 입주자등,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인권침해 방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익)

□ 주요 제정 내용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과 입주자등,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에서 시장은 종사자에 대한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실태 조사에서 종사자의 인권 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기본시설 제공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지원범위와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지난 6월 13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에서 시장은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합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폭행·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의2에서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 제정에 있어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서 시장은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기준에 종사자 휴게시설 설치와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포함시켰으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시 종사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 규정 관리규약 미반영에 대해 감점하는 심사항목을 포함하는 등 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종사자들의 인권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였을 때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체계적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입주민등과 종사자간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종사자의 인권 관련 실태조사는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으며, 실태조사 결과가 문제 해결과 개선 방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겠음.
- 또한 기본계획을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본계획이 다른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인식으로 중요성이 낮아지거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이 현실적이고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	답변
○ 현재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가 있는데 본 조례를 따로 제정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 인권보장 조례는 포괄적 조례이고,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였음.
○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 현재 노동권익센터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상담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지원할 계획임.
○ 본 조례로 많은 종사자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조례인만큼 사장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면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